제 104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12월 2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이**	이** 1985-06-09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	무단전출
김**	김** 1953-01-16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	무단전출
이**	이** 1955-04-20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	무단전출
김**	김** 1979-09-22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	무단전출
임**	임** 1967-03-07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	무단전출
박**	박** 1954-04-03	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	무단전출
지**	지** 1973-03-04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	무단전출
한**	한** 1975-07-20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	무단전출
조**	조** 1961-06-07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34번길	무단전출
최**	최** 1972-12-25	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34번길	무단전출
박**	박** 1982-03-24	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이 명희 문의전화 : 032-560-4617)

2016년 12월 13일

검단4동장